

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

제정 2018. 11. 16 조례 제2995호
일부개정 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(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
3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
4.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
5. 노인 성범죄·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
6.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노인 성인식개선사업)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·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
2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
3.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
4.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 <개정 2019. 11. 15>

제5조(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,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⑨ 부터 ⑳ 까지 생략